

'96. 12. 23.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 活動狀況 報告

(中 間 結 果 報 告 書)

본 보고서는 '96. 7. 24 충청북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96. 12. 20까지 활동한 상황의 중간결과 보고임.

忠清北道議會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

목 차

| | |
|---|-----|
| I. 방 침 | 534 |
| II. 댐의 기본현황 | 535 |
| III.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 536 |
| 1. 5대 댐특위 주요 활동상황 | 536 |
| 2. 현지방문 및 건의사항 수렴 | 542 |
| 3. 향후 추진계획 | 544 |
| ※ 국회 입법청원 추진 동향 | 545 |
| IV. 참고 자료 | 547 |
|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
| 2.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청원 제출안 | |
| ※ '96. 12. 12 청원심사,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안 비교 수록 | |
| 3. 댐과 관련한 그동안 주요 활동상황 (4대 특별위원회 및 교육사회위원회 활동) | |

- 국가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충주·대청댐등은 수도권을 비롯한 관련지역의 생활용수, 전력공급 등 국가산업이나 경제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 댐 주변지역의 바람직하지 못한 자연환경 변화와 각종 규제에 의해 관련지역 주민들은 생활의 큰 불편은 물론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 그동안 폭넓게 수렴된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과 관련 법규등을 심도있게 분석, 확인, 검토하여 댐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작성 국회를 통한 청원입법으로 다루고
- 또한 충청북도와 인접된 지역에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사후조치 및 영월댐 건설에 따른 사전조치등을 의정활동을 통해 강구하고자 함.

1. 방 침

1. 특별법 초안을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와 업무협의 및 의원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2. 그동안 수렴된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과 관련법규 등을 분석, 확인, 검토하고 충청북도 측의 법률 초안등을 수렴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등 국회 청원 입법안을 작성한다.
3. 소개 국회의원 선정 및 청원 방향을 모색 충청북도 국회의원 및 타도 댐과 연계된 의회, 국회의원 및 관계부처 등을 방문 청원입법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4. 또한 충청북도와 인접된 지역에 용담댐 건설에 따른 사후조치 및 영월댐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조치를 의정활동을 통해 강구하고자 함

II. 댐의 기본현황

| 구 분 | 칠 성 댐 | 충 주 댐 | 대 청 댐 | 용 담 댐 (예 상 치) |
|-------|-----------------------|------------------------|-------------------------------|-------------------------|
| 총사업비 | | 5,475 억원 | 1,445 억원 | 3,553 억원 |
| 보 상 금 | | 1,421 억원 | 472 억원 | |
| 공사기간 | '52.11 ~ '57. 4 | '78. 6 ~ '85.10 | '75. 3 ~ '80.12 | '90 ~ '97 |
| 수 가 구 | | 7,105세대 | 4,075세대 | 2,467세대 |
| 댐 높 이 | 28 M | 97.5 M | 72 M | 70 M |
| 댐 길 이 | 171 M | 464 M | 495 M | 498 M |
| 홍 수 위 | EL 135 M | EL 145 M | EL 80 M | EL 265 M |
| 만 수 위 | EL 135.6 M | EL 141 M | EL 76.5 M | EL 266 M |
| 지수면적 | 1.75 km ² | 97 km ² | 72.8 km ² | 36.2 km ² |
| 호수길이 | 11 ~ 12 Km | 68 Km | 86 Km | |
| 저 수 량 | 15.3백만 m ³ | 2,750백만 m ³ | 1,490백만 m ³ | 815백만 m ³ |
| 용수공급 | | 3,380 백만m ³ | 1,649백만 m ³ | 13.5백만 m ³ |
| 발전용량 | 2,600 KW | 40만 KW | 9만 KW | 26,300 KW |
|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 | 콘크리트 중력식댐 | 콘크리트 중력식 및 석괴식의 복합형댐 |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형 석괴식댐 |

Ⅲ.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1. 5대 댐특위 주요 활동상황

□ 특별법 제정관련 간담회 개최

- 일 시 : '96. 6. 18
-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참석인원 : 15명(도의원, 충청북도, 전문위원실)
- 간담회내용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필요성 토론 및 의정활동 추진방향 모색

□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일 시 : '96. 7. 24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장 소 : 본회의장
- 구성인원 : 박학래위원장의 11명 (최선훈간사, 최종철, 이선호, 이길하, 오성진,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박온섭, 박제국, 박상수의원('96. 10.29))
- 활동기간 : '96. 7. 24 ~ '97. 6. 30

□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96. 8. 6
-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협의내용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세부 추진계획 수립
 - 특별법 내용
 - 향후 건설될 용담댐, 영월댐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지확인 및 관련부처 방문등)

□ 특별법 소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 '96. 8. 16
-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참석인원 : 9명 (담관련대책특별위원회 7, 업무보조 2)
- 회의내용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안 검토
 - 특별법안에 대한 자문 법률전문가 선정
 - 소개 국회의원 선정등

□ 특별법 청원입법을 위한 자문 법률전문가 면담

- 일 시 : '96. 8. 20
- 참석인원 : 5명 (담관련대책특별위원회 2, 법률전문가2, 업무보조1)
- 면담내용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검토

□ 국회 방문

- 일 시 : '96. 8. 23
- 장 소 : 국회의사당
- 참석인원 : 10명 (담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 7, 도의원 1, 관련공무원 2)
- 방문내용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지설명
 - 청원입법을 위한 소개 국회의원 협의

□ 댐 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일 시 : '96. 8. 26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회의내용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 채택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특별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의 건 채택

- 일 시 : '96. 8. 28
- 장 소 : 본회의장
- 심 사 안 건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서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한국 수자원공사 댐관리처 래방

- 일 시 : '96. 9. 18
-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래 방 자 : 댐운영부장 장기환외 1명
- 토 의 내 용
 - 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자원을 국가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임
 -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댐과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다하겠음

□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 일 시 : '96. 9. 2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인 원 : 11명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
- 내 용
 - 특별법 국회 접수상황 설명
 - 국회 특별법 청원접수후 위원회 위원들의 능동적 의정활동 전개
 - 전국 운영위원회 및 의장단을 통하여 특별법에 대한 취지 및 여론 환기

□ 청원서 접수

- 일 시 : '96. 9. 23
- 장 소 : 국 회
- 회 부 내 용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6. 10. 7자로 회부하였음을 통지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현지방문

- 일 시 : '96. 10. 1 ~ 2 (2일간)
- 장소 및 방문기관
 - 충주시 목행동 산64-2 (사단법인 송조회) 충주호 주변, 충주시청
 - 단양군 별곡리 충주호 주변, 단양군청
- 참석인원 : 15명 (댐관련대책특별위원10, 업무보조2, 충청북도1, 의회사무처2명)
※ 해당 시군 관련공무원, 의원, 관련지역 주민대표 등
- 방문내용
 - 댐주변 현황 및 댐주변지역 주민요구사항, 환경상태등 문제점 현황 청취
 - 댐주변지역 현지점검 및 주민 여론 수렴
- 방문결과
 - 충주시 :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기준 상향 조정의 5건 건의사항 수렴 및 현지방문
 - 단양군 : 수위 조정지댐(수중보) 건설의 5건 건의사항 수렴 및 현지방문

□ 댐특위 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96. 10. 7 15:30 ~ 16:3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석인원 : 11명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회의내용
 - '96. 10. 1 ~2 (2일간) 현지방문 결과보고
 - 대청댐, 용담댐등 다른지역 댐주변 현지방문 실시한 후 건의사항 및 문제점 등을 도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충청북도에 촉구할 것은 촉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 추진

□ 댐특위 소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 '96. 11. 2
-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참석인원 : 4명 (박학래위원장의외 3명)
- 회의내용 : 청원 접수후 국회 청원처리 상황 설명 및 향후 의정활동 방향 논의 (국회의원, 정당관계부서 등에 자료 송부 및 방문활동 구체화)

※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될 관련 법안들과 통합 조정해서 처리할듯 (11월 하순경)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청원입법안 유인 배부

- 유인부수 : 500부
- 배부처 : 국회의원 299, 광역도의회의장 및 운영위원장 32, 정당정책위 8, 신한국당대책위원 18, 환경포럼 50, 기타(언론홍보 및 국회방문등) 93부

□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방문 의정활동 추진

- 일 시 : '96.11.12 ~ '96.11.15
- 방문기관 : 국회 및 관련기관(12개 기관)
(신경식, 김종호, 한영애, 김충일, 김명규, 김상현, 백남치, 권오을, 오용운 국회의원, 환경부장관, 신한국당 정책위 의장, 서울 상주 지방지 기자)
- 참석인원 : 7명(박학래 위원장의외 6명)
- 활동내용
 -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 동안의 활동상황 및 향후 의정방향 논의
 - 청원입법안 취지설명 및 입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등

□ 국회 청원심사 청원인 진술을 위한 국회참석 및 의정활동 추진

- 기 간 : '96. 12. 11 ~ 12. 12 (2일간)

- 국회 청원입법안 청원심사 : '96. 12. 12 10: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 참석인원 : 3명 (박학래위원장, 박온섭위원, 최종철위원)

- 의정활동 내용

특정다목적담법 청원입법안에 대한 업무협의 및 국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에 의거 청원인 진술을 위한 참석

- 청원심사결과

- 정부측에서 성안중인 법률안이 나오면 본건 청원과 연계처리
- 정부측 법률안이 나올때까지 계류 처리

2. 현지방문 및 건의사항 수렴

□ 기 간 : '96. 10 .1 ~2 (2일간)

□ 장소 및 방문기관

- 충주시 목벌동 산64-2 (사단법인 송조회) 충주호 주변, 충주시청
- 단양군 벌곡리 충주호 주변, 단양군청

□ 참 석 인 원

- 댐관련대책위원회위원: 10명 (박학래, 최선환, 최종철, 이선호, 이길하, 오성진, 유재철, 장준호, 박은섭, 박제국위원)
- 업 무 보 조 : 2명 (전문위원 김영만의 1명)
- 충 청 복 도 : 1명 (환경관리계장 채 근 석)
- 의회사무처 : 2명 (총무과 홍보계 김형주의 1명)
- 해당시군 관련공무원, 의원, 관련지역 주민대표 등

□ 방 문 내 용

- 댐 주변 현황 및 댐주변지역 주민요구사항, 환경상태등 문제점 현황청취
- 댐주변지역 현지점검 및 주민여론 수렴

□ 충주댐 관련 건의사항

[충 주 시]

- 송조회(운천호) 운영비 전액 지원
- 충주댐구역내 유료낚시터, 가두리양식장 근본대책 수립
- 지역개발세의 현실화
-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기준 상향조정
- 충주 조정지댐 하류지역 수해 상습농경지 항구대책
- 하검단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지원

[단 양 군]

- 수위 조정지댐(수중보) 건설
- 산업기능 보강의 도시계획도로 건설
- 개발 가능한 제내지의 지역토지 환원
- 유희지 관리 위탁협약의 개선
- 적성대교 가설
- 상진 - 고수간 비상우회도로 건설

□ 현지방문 사항

[충 주 시]

- 사단법인 송조회 운천호 선착장 현지방문 : 송조회 운영실적 현황 청취

[단 양 군]

- 충주댐상류 단양지역 댐저수지역 늪지, 뺨 현지방문 : 환경오염원 점검
(현황설명 : 별첨)

□ 방문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 현재 청원입법으로 제출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주댐 관련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노력할 것이며, 해당 시군에서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줄것을 당부
- 송조회 관련 건의사항은 도선일지 및 유류사용량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사무감사를 통하여 처리토록 협조
- 단양지역 댐저수지역 늪지 뺨의 환경오염원 문제는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난후 간담회를 통하여 처리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음
- 현지방문 결과보고를 충청북도에 이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3. 향후 추진계획

- 현지방문등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댐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 수집,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집행기관 및 관계부처 등에 건의 촉구.
- 영월댐 건설과 관련하여 오염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의정활동을 통하여 추진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국회입법청원추진동향

'96. 9. 23 충북도의회 댐특위에서 국회에 입법 청원한 동법률 제정안에 대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의결과
입

□ 국회 건교위 청원심사소위원회

○ 구 성 : 5 인

- 위원장 : 이용삼의원 (신한국당 강원 철원, 화천, 양구)

- 위 원 : 4 인 (박시균, 백승홍, 국창근, 이원범의원)

○ 회의개최 (5인 전원참석)

- '96. 12. 12. 10:30 ~ (국회건교위 소회의실)

- 처리안건 : 충북도의회 청원법률안 심사(11:00~11:30) 외13건

※ 도의회 댐특위 박학래위원장, 최종철, 박은섭의원 참석

□ 청원심사 결과

① 김영준 소개의원 취지설명

○ 댐주변지역 주민은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 수질을 맑게 보전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에서 과중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어

○ 지역주민들에게 규제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이 절대필요

○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와 댐건설 촉진을 위해서도 동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

② 국회 건교위 수석전문위원 이 승 훈 의견제시

- 댐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하여 보상과 지원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본건 청원의 취지는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 그러나, 법률안에 일부 추가할점이 있어 정부측(건교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여 입법조치 하여야할 것임
 - 다른댐지역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으나 다목적댐지역만 언급
 - 수혜지역을 지정하기는 어려워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함 등

③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1급) 이 현 석 의견제시

- 건교부 입장에서도 청원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청원법률안을 참고하여
-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 「댐건설및 지원에 관한법률안」을 건교부에서 성안중에 있어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청원심사소위 의결사항및 향후계획

- 정부측에서 성안중인 법률안이 나오면 본건 청원과 연계처리
- 정부측 법률안이 나올때까지 계류처리

참 고 자 료

[별 첨·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12명)

위원장 박 학 래 (교육사회, 비례대표)

간 사 최 선 환 (건설교통, 총주6)

위 원 최 종 철 (건설교통, 청주4)

이 선 호 (농림수산, 총주5)

이 길 하 (교육사회, 제천1)

오 성 진 (건설교통, 청원2)

유 재 철 (교육사회, 보은2)

송 재 주 (기획경제, 옥천1)

장 준 호 (건설교통, 영동1)

박 온 섭 (농림수산, 괴산2)

박 제 국 (교육사회, 음성3)

박 상 수 (내 무, 제천4)

※ 활동기간 : '96. 7. 24 ~ '97. 6. 30

[별 첨 2]

□ 법률안 비교자료

| 구 분 | 도 의 회 청 원 | 국회의원 제안안 | 신한국당 법률안 |
|-----------------------|---------------------------|---------------------------|-----------------------------|
| | — 4장17조 부칙2 — | — 4장15조 부칙2조 — | — 3장17조 부칙2조 — |
| 1. 담 적용범위 | · 10개 특정다목적댐 | · 10개 특정다목적댐 | · 팔당, 대청댐 |
| 2. 법권리부처 | · 건설교통부 | · 건설교통부 | · 환경부 |
| 3. 비용부담 | · 국가, 원수공급자, 수혜지역 자치단체 | · 좌 동 | · 국가, 원수공급자 및 수혜자, 수질오염자 |
| 4. 재원관리 | · 건설교통부 기금 | · 건설교통부 기금 | · 자치단체 특별회계 |
| 5. 관리계획 수립 | · 건설교통부장관 (장기종합지원계획) | · 건설교통부장관 (5년단위장기종합계획) | · 환경부장관(5년단위) |
| 6. 특별구역 지정 | ————— | ————— | · 환경부장관승인얻어 환경관리특별구역지정 |
| 7. 토지의매수 청구제도 | ————— | ————— | · 도 입 |
| 8. 관리조직 | · 지원사업심의위원회 | · 지원사업심의위원회 | · 상수원자율감시단설치 |
| 9. 시 행 일 | · '97. 1. 1부터 | · '97. 6. 1부터 | ·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
| 10. 시행주체 | ————— | · 명 기 | ————— |
| 11. 지원사업 의 시행기간 | · 명 기 | · 삭 제 | ————— |

국 회 청 원 제 출 안
(당 초)

特定多目的댐周邊地域에 관한法律(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법은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원활을 기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다목적댐의 수질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댐" 이라함은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하는 댐을 말한다.
2. "환경기초시설" 이라함은 환경관련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수, 분뇨, 폐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3. "다목적댐주변지역" 과 "수혜지역" 이라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목적댐주변지역 및 수혜지역지정·고시등) ① 다목적댐주변지역 및 수혜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주변지역 및 수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관련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지정된 내용을 변경할때도 또한 같다.

제4조(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의 설치)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내에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지 원 사 업 기 금

제5조(기금의 설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 부터의 출연금
2. 특정다목적댐법 제30조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수탁관리자의 출연금
3. 수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전년도 사용기금의 이월액및 정산액
6. 기타 조성된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수탁관리자는 발전, 수도 또는 공업용수의 판매수익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부담) 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혜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부담금을 부담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기일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납부토록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이를 사용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2. 지원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차입)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 3 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1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건설부교통부장관은 다목적댐 주변지역별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종합지원계획(이하 "장기계획" 이라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시장.군수는 제11조 제1항의 장기계획에 의하여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4월 말일 이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3조(지원사업의 종류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 과 같다.

1. 주변지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 주변지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환경기초시설비등 특별지원사업
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 공공시설, 육영사업등

4. 환경변화조사 연구기관 설치 . 운영지원사업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유형별 지원내용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원기금으로 해당자치단체에 교부 한다.

제15조(지원사업의 시행기간) ①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은 제11조 제1항의 장기계획상 사업종료시 까지로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보고및검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기금이 지원된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적용범위) 이법 시행일 이전 부터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관리되고 있는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과의 관계) ① 이법 시행과 동시에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과 제42조의4는 폐지한다. 다만 동조와 관련하여 시행되는 사업은 사업 종료시 까지 종전의 법 적용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 사용잔액은 사업 종료후 2월이내에 이법 제6조의 기금으로 납입한다.

제 출 후 조 정 안
(참 고 자 료)

特定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에 관한法律(案)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多目的댐周邊地域에 대한 支援을 통하여 水資源의 開發과 利用에 圓滑을 기하고 周邊地域 住民의 福祉를 增進함으로써 多目的댐의 水質保全 및 國民生活의 質的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多目的댐" 이라함은 特定多目的댐法 第2條 第1項 第1號에서 定義하는 댐을 말한다.
2. "環境基礎施設" 이라함은 環境관련法律에 의하여 設置하는 下水, 糞尿, 汚·廢水, 畜産廢水處理施設을 말한다.
3. "多目的댐周邊地域" 과 "受惠地域" 이라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告示된 地域을 말한다.

第3條(多目的댐周邊地域 및 受惠地域指定·告示등) ① 多目的댐周邊地域 및 受惠地域은 建設交通部長官이 指定·告示한다.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多目的댐周邊地域 및 受惠地域을 指定하고자 할때는 관련 서울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이하 "市·道知事"라한다)의 意見을 듣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長과 協議를 거쳐야한다. 指定된 내용을 變更 할때도 또한 같다.

第4條(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등의 設置) ①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多目的댐周邊地域에 대한 支援事業(이하 "支援事業" 이라한다)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內에 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 라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의 構成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2 章 支 援 事 業 基 金

第5條(基金의 設置) 支援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特定多目的의댐周邊地域支援事業基金(이하 "基金" 이라한다)을 設置한다.

第6條(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一般會計로 부터의 出捐金
2. 特定多目的댐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多目的댐 受託管理者의 出捐金
3. 受惠地域 地方自治團體의 負擔金
4.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5. 前年度 使用基金의 移越額및 精算額

6. 其他 造成된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②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多目的댐 受託管理者는 發電, 水道 또는 工業用水의 販賣收入金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比率의 金額을 出捐하여야 한다.

第7條(基金의 負擔) ① 第6條 第1項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受惠地域 地方自治團體에서 負擔하는 金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方法으로 負擔金을 負擔한다.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納期日을 정하여 해당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納付토록 한다.

第8條(基金의 用度)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에 이를 使用한다.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支援事業
2. 支援事業에 附帶되는 事業

第9條(基金의 運用·管理) ① 基金은 建設交通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

② 基金의 運用·管理 및 使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이 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基金管理基本法에 따른다.

第10條(基金의 借入) 基金의 運用上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基金의 負

擔으로 金融機關이나 다른 基金으로 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第 3 章 支 援 事 業 的 施 行

第11條(支援事業計劃의 樹立)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多目的댐周邊地
域別 支援事業에 관한 長期綜合支援計劃(이하 "長期計劃" 이라한다)
을 樹立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計劃의 樹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
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事業計劃書 提出) ① 多目的댐 周邊地域의 市長·郡守는 第11條
第1項의 長期計劃에 의하여 해당년도 事業計劃書를 市·道知事에게
제출한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事業計劃書를 綜合
하여 事業施行 前年度 4月 末日 以前까지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한
다.

第13條(支援事業의 種類등) ① 支援事業의 種類는 다음 各號의 1 과 같
다.

1. 周邊地域 自治團體에서 運營하는 環境基礎施設 運營
2. 周邊地域 自治團體에서 施行하는 環境基礎施設등 特別支援事業
3.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上水源水質保全 特別對策

地域으로 指定된 地域의 開發과 住民의 福利增進을 위하여 施行하는 所得增大, 公共施設, 育英事業등

4. 環境變化調査 研究機關 設置·運營支援事業등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事業의 類型別 支援內容등에 관한 具體的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支援金 決定)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 부터 제출받은 事業計劃과 基金運用計劃을 確定하고 이에 所要되는 事業費는 支援基金으로 해당 地方自治團體에 交付한다.

第15條(支援事業의 施行期間) ① 第13條 第1項 第1號 및 第2號의 支援事業은 持續적으로 施行한다.

② 第13條 第1項 第3號의 事業은 第11條 第1項의 長期計劃上 事業終了時까지로 한다.

第 4 章 補 則

第16條(報告 및 檢査)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支援基金이 支援된 地方自治團體의長 에게 報告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支援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標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7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法律과의 關係) ① 이 법 施行과 同時에 特定多目的법 第42條의3과 第42條의4는 廢止한다. 다만 同條와 관련하여 施行되는 事業은 事業 終了時 까지 從前의 法適用을 받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댐周邊地域支援事業 財源 使用殘額은 事業 終了後 2月以內에 이 법 第6條의 基金으로 納入한다.

심 의 제 안 설 명 안
(김 영 준 국 회 의 원)

特定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에 관한法律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多目的댐의 建設 및 운영으로 인한 周邊地域의 被害를 補償하고 생활기반을 再建하는 支援事業을 통하여 水資源의 開發과 利用 및 水質保全에 원활을 기하고 周邊地域 住民의 福祉를 增進함으로써 國民生活의 質的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多目的댐” 이라함은 特定多目的댐法 第2條第1項第1號에서 定義하는 댐을 말한다.
2. “環境基礎施設” 이라함은 環境關聯法律에 의하여 設置하는 下水, 糞尿, 汚·廢水, 畜産廢水處理施設을 말한다.
3. “多目的댐周邊地域” 과 “受惠地域”이라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地域을 말한다.

第3條(多目的댐周邊地域 및 受惠地域 지정·告示등) ①多目的댐周邊地域 및 受惠地域은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告示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多目的댐周邊地域 및

受惠地域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서울特別市長·廣城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의 意見을 듣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長과 協議를 거쳐야한다.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第4條(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등의 設置) ①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多目的댐周邊地域에 대한 支援事業(이하 “支援事業” 이라 한다)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 소속 하에 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支援事業基金

第5條(基金의 設置) 支援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事業基金(이하 “基金” 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6條(基金의 造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2. 特定多目的댐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댐使用權者의 出捐金
3. 受惠地域 地方自治團體의 負擔金
4.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5. 前年度 使用基金의 移越額 및 精算額
6. 造成된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7. 기타 收益金

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賦使用權者는 發電, 水道 또는 工業用 水의 販賣收入金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比率의 金額를 出捐하여 야 한다.

第7條(基金의 負擔) ①第6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受惠地域 地方 自治團體에서 負擔하는 負擔金의 算出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納期日을 정하 여 해당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納付하도록 한다.

第8條(基金의 用度)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에 이를 使用한다.

1.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支援事業
2. 第1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

第9條(基金의 관리·運用) ①基金은 建設交通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②基金의 관리·運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 다.

第10條(基金의 借入) 基金의 運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金融機關 이나 다른 基金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第3章 支援事業의 施行

第11條(支援事業計劃의 樹立) ①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에 의한 多目的덤周邊地域 市·道知事의 建議와 委員會의 審議結果를 바탕으로 地域別로 支援事業에 관한 5年단위의 長期綜合計劃(이하 “長期計劃”이라 한다)과 年度別 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1. 周邊地域 市·道知事는 해당지역 市長·郡守의 建議를 바탕으로 年度別 支援事業建議書(이하 “年度別建議書”라 한다)를 사업시행 前年度 4月末日까지, 長期計劃 建議書를 해당年度 4月末日까지 작성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周邊地域 市長, 郡守는 年度別 支援事業建議要請書(이하 “年度別要請書”라 한다)를 사업시행 前年度 2月末까지, 長期計劃建議要請書를 해당年度 2月末까지 작성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수립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支援事業의 종류등) ①支援事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多目的덤 建設 및 운영과 水道法, 國土利用管理法등 관련법률상 의 규제에 의해 발생한 農地와 農作物, 家屋, 養殖場 기타 財産上

被害와 住民의 疾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건강상의 被害補償

2. 多目的댐 水質保全을 위해 地方自治團體 또는 多目的댐 周邊地域 住民이 운영하는 環境基礎設施의 設置 및 운영비 지원
 3. 多目的댐 建設 및 운영으로 인해 초래된 多目的댐 周邊地域 住民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移設道路의 개설 및 移設道路 擴鋪裝事業, 船着場 설치 및 官公船 운영비 지원
 4. 多目的댐 建設 및 운영으로 인한 環境變化를 調査하기 위한 研究機關 設置, 운영 및 用役費 지원
 5. 大統領令이 정하는 多目的댐 區域안의 遊渡船등의 安全 및 內水面 環境保護指導등을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설치, 운영, 관리하는 各種 事業所의 運營費 및 管理費 지원
 6. 住民의 福利增進을 위한 所得增大, 公共施設, 育英 및 醫療事業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事業의 종류별 支援範圍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施行主體) ①支援事業은 建設交通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市·郡에 委任하여 施行한다.

②해당 市·郡에 第11條第1項第2號의 年度別要請書와 長期計劃 建議要請書 제출 및 第12條第1項의 事業의 施行을 위해 住民代表와 關係專門家가 참여하는 地域協議會를 들 수 있다.

第14條(支援金 決定)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年度別 計劃과 基金運用計劃을 확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事業費는 支援基金으로 해당 地方自治團體에 交付한다.

第4章 補 則

第15條(報告 및 檢査)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支援基金이 支援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支援事業에 관한 事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標를 지니고 이를 關係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7年 6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法律의 改正등) ①特定多目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의3 및 第42條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삭제되는 特定多目的법 第42條의3 및 第4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되는 사업은 그 사업 終了時까지 從前의 規定의 適用을 받는다.

[신 한국 당 법 률 안]

(팔 당 , 대 청 호)

팔당·대청호上水源水質改善 및 支援등에관한法律案

| | |
|----------|--|
| 議案 番號 | |
|----------|--|

發議年月日：1996. 11. 28.

發議者：李揆澤 鄭泳薰

李海龜 朴憲基

黃圭宣 金吉煥

李康熙 議員

外 20人

提案理由

팔당·대청호上水源 管理地域의 水質을 改善함과 아울러 완벽한 環境基礎施設이 建設되기 전까지는 팔당·대청호上水源 管理地域내 주민의 財產權 制限등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일방적인 犧牲을 강수하도록 하는 것은 地域衡平上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팔당·대청호上水源 管理地域으로부터 原水를 취수, 공급하는 受惠地域 수도사업자의 出捐金, 國庫補助金 등을 財源으로 지역주민에 대하여 이에 相應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環境基礎施設建設이 效率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制定함.

主要骨子

가. 上水源의 水質 汚染豫防 및 改善하기 위한 費用은 國家, 原水供給者 및 受惠者, 水質汚染原因者가 부담토록하는 費用負擔原則을 정함(案 第3條)

- 나. 上水源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상 上水源保護區域과 환경정책기본법상 特別對策地域을 上水源管理地域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함(案 5條)
- 다. 환경부장관은 매 5년마다 上水源 管理地域의 水質改善을 위하여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執行計劃을 수립, 시행토록 함(案 6條)
- 라. 上水源管理地域의 자율적인 감시 및 水質改善 事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上水源 自律監視團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함(案 第8條)
- 마. 환경부장관은 매년 上水源 管理地域의 水質改善事業 과 住民 支援事業을 수립·시행토록 함(案 第9條, 第10條)
- 바. 上水源 環境基礎施設 建設 등의 水質改善사업과 住民支援事業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를 위해, 受惠地域 수도사업자의 出捐金, 國庫 및 地方費 등으로 上水源管理特別會計를 설치토록 함(案 第12條)

팔당·대청호上水源水質改善및支援등에관한法律案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팔당·대청호上水源의 적정管理와 支援事業을 효율적으로 推進함으로써 上水源의 水質改善을 促進하고 地域住民의 所得增大 및 福祉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上水源管理地域"이라함은 上水源의 確保와 水質保全上 不可避하다고 認定되는 팔당·대청호의 水系地域을 말한다.
2. "水道事業者"라함은 水道法 제3조제19호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者를 말한다.
3. "環境基礎施設"이라함은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環境施設을 말한다.

第3條(費用負擔의 原則) ① 上水源의 水質汚染을 豫防하거나 改善하기 위하여 드는 制반費用은 國家, 原水供給者 및 受惠者, 水質汚染原因者가 負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한 負擔額 金額의 範圍, 費用算定方法, 賦課徵收節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條(다른法律과의 關係) 이 법의 規定에 의한 上水源管理地域에 대하여는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適用한다.

第 2 章 上水源管理地域의 指定 · 管理

第5條(上水源管理地域의 區分) ① 팔당·대청호上水源管理地域은 다음 各號와 같이 上水源保護區域, 上水源直接影響區域, 上水源間接影響區域으로 구분한다.

1. 上水源保護區域 : 上水源의 確保와 水質保全上 不可避하다고 認定되는 地域

2. 上水源直接影響區域：上水源의 水質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地域
- ② 上水源管理地域의 範圍, 行爲制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上水源 水質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地域에 대하여는 上水源管理地域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③ 環境部長官은 上水源管理地域을 綜合管理하기 위하여 이를 全擔하는 管理機構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第6條(물管理計劃) ① 환경부장관은 上水源管理地域의 水質改善을 위한 計劃(이하 “물管理計劃”이라 한다)을 5년마다 樹立하여야 한다.

② 물管理計劃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環境基準의 段階的 達成目標
2. 環境基準達成을 위한 汚染負荷量 削減計劃
3. 地方自治團體別 汚染負荷量 削減計劃
4. 汚染負荷量 減縮에 所要되는 財政需要 展望
5. 기타 環境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물管理計劃에 따라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執行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地域內 環境基準達成을 위한 汚染負荷量 減縮計劃
2. 汚染負荷量의 減縮을 위한 水質汚染防止施設의 擴充計劃

제7조(環境管理特別區域의 指定) ① 시·도지사는 地域의 經濟振興과 地域住民의 所得増大 및 福祉増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上水源直·間接影響區域內에서 대통령령이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부장관의 承認을 얻어 環境管理特別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範圍 및 기타 필요한 細部的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8條(上水源自律監視團) ① 시·도지사는 上水源管理地域別로 汚染防止 및 水質改善 事業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한 團體의 設立을 承認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上水源自律監視團의 構成員이 되기 위하여는 上水源管理 地域에 5년이상 계속하여 居住하여 온자중 대통령령이 定하는 자에 한한다.

第 3 章 上水源管理地域の支援 및 財源의 確保

第9條(上水源水質改善事業) 환경부장관은 매년 上水源管理地域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上水源 水質改善 事業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汚染負荷量을 減縮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環境基礎施設의 設置 및 補修

나. 下水道整備

다. 畜産廢水의 處理 또는 堆肥化 事業

라. 쓰레기 燒却 및 埋立施設 設置 및 補修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水質保全에 寄與하는 事業

第10條(住民支援事業) ① 환경부장관은 매년 上水源管理地域에 대하여 住民支援事業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한 住民支援事業의 種類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所得増大事業

2. 福祉增進事業

3. 育英事業

4. 第16條 規定에 의한 土地의 買受

5.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③ 제2항의 規定에 의한 住民支援事業의 細部事業 內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1條(上水源管理地域에 대한 財政上의 特別措置) ① 國家는 上水源管理地域의 水質改善을 위한 施設設置 및 支援計劃 등에 소요되는 費用을 地方讓與金法, 交付稅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地域에 優先하여 補助·融資 또는 支援할 수 있다.

② 國家는 上水源管理地域의 中小企業者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水質改善에 필요한 資金의 轉讓·融資, 技術支援 등을 할 수 있다.

第12條(上水源管理特別會計의 設置) ① 上水源의 水質改善과 上水源管理地域 支援計劃 및 環境管理特別區域開發事業에 소요되는 事業費를 確保하기 위하여 上水源管理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 特別會計는 시·도지사가 管理·運營한다.

第13條(特別會計의 歲入) 特別會計의 歲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補助金
2. 一般會計 및 다른 特別會計의 轉入金
3. 環境管理特別區域안의 公有財産의 處分財源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水道事業者의 出捐金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買受한 土地로 인한 收益金
6. 借入金
7. 대통령령이 정하는 比率에 따라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補助金
8.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資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第14條(特別會計의 歲出) 特別會計의 歲出은 다음 각호의 用途로 使用하여야 한다.

1. 環境基礎設施의 設置 및 運營
2. 住民支援事業
3. 自然環境의 調査 및 그 保全을 위한 資金
4. 地方自治團體가 시행자인 경우 당해 環境管理特別區域의 土地를 買入하기 위한 資金
5. 生活環境改善, 保健衛生 및 社會福祉事業을 위한 資金
6. 道路·上下水道·電氣設備·通信設備·용수시설 등 開設事業과 관련된 公共施設投資費중 일부
7. 特別會計의 管理·運用에 필요한 資金
8. 上水源 管理機構 運營費

第15條(水道事業者의 出捐金) ① 上水源管理地域내에서 原水を 취수하는 水道事業者는 水道事業의 販賣收益金중 100분의 10이내를 각호의 사항이 反影된 出捐金으로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特別會計에 出捐하여야 한다.

1. 원수취수량
2. 水道料金の 平均單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道事業者의 範圍, 出捐金の 規模 및 出捐節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6條(土地의 買受請求) ① 上水源管理地域안의 土地所有者가 上水源管理地域의 指定에 따른 土地利用 또는 施設 設置 및 利用規制로 인하여 生業維持 또는 日常生活에 현저한 困難을 받게 된 경우에는 國家에 대하여 당해 土地 및 土地에 부착된 施設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당해 土地가 타인의 權利의 目的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買受請求를 받은 때에는 豫算이 許容하는 範圍

안에서 이를 買受하여야 한다.

③ 國家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水道事業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土地를 買受하게 할 수 있다.

第17條(權限의 委任) 이 법의 規定에 의한 環境부장관의 權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環境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2條(經過措置) ① 이 법 施行 당시의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 제2조4호 및 시행령제4조의2, 首都圈整備計劃法 제6조제3항, 제9조 및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自然保全區域의 範圍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上水源管理地域으로 조정한다.

[별 침 3]

3. 댐과 관련한 그동안 주요 활동상황 (4대 특위 및 교육사회위원회)

□ 댐 관련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 기 간 : '93. 9. 13 ~ '95. 6. 30 (4대 도의회)
- 활동사항
 - 주민 여론수렴 및 현지조사 : '93. 10. 5 ~ 10. 7
 - 수자원 공사 관계관과의 간담회 : '93. 10. 5
 - 댐 관련 시군 의원과의 간담회 : '93. 10. 14
 - 댐관련 현안 대토론회 : '93. 10. 21
 - 위원회 지원반 편성 : 도시계획과장의 15명
 - 댐 관련사업 보고회 및 대책반과 협의회 : 6회
 - 위원회 활동사항 관련기관 송부 : 국회의원, 시군의회회장 23명
 - 댐 주변지역 포괄사업비 확보 숙원사업 추진 : 10억원 등

□ 환경부고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 및 종합대책에 대한 청원 ('95.12. 8)

- 청 원 인 : 유재철, 송재주, 이회복, 이민희(대표 소개의원 : 이회복)
- 심사결과 : '95.12.18(제120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 위법성 여부 : 수용하지 않음
 - 지원대책 및 공무원 문책 : 청원으로 수용 총복도로 하여금 처리
 - 현행고시 폐지 : 청원으로 수용 본회의 의결후 건의안 관계부처 건의

□ 대청댐 주변 실태확인 및 주민여론 수렴(교육사회위원회)

- 일 시 : '96. 5. 9
- 장 소 : 보은군 회남면 일대
- 참석인원 : 17명

· 방문결과

- 댐 주변지역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며, 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봄
-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음

□ 특별법 제정관련 간담회 개최

- 일 시 : '96. 6. 18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인원 : 15명(도의원, 충청북도, 전문위원실)
- 주요내용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필요성 청취
 - 향후 의정활동 추진 방향 모색

□ 용담댐 건설 추진 경위

- '87.11 ~ '88.11 : 전주 광역도시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88. 8 ~ '89. 8 : 전주권 2단계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 '89. 4 ~ '89. 8 : 용담 수원 적정개발 방안 조사(건설부)
- '89.12 ~ '90. 8 : 용담다목적댐 타당성 조사(수자원공사)
- '90.12 ~ '91.12 : 용담다목적댐 실시설계(수자원공사)
- '90. 1.10 : 용담댐 반대 투쟁위원회 구성 및 주민 시위
- '91. 2.27 : 보상업무 위탁협약 체결(수자원공사 - 전라북도)
- '91. 7.10 : 용담댐건설 지원사업소 개소
- '91.11.16 : 기본계획 공고 (건설부 공고 제138호)
- '91.12.16 : 하천 예정지 고시(건설부 고시 제772호)
- '92.10.29 : 공사 착공
- '92.10 : 금강수계 보전을 위한 4개시도 민간단체 협력위원회, 토론회 개최

- '92.12.26 : 실시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1992-710호)
- '93. 2. 9 : 용담댐 건설사업 설명회 개최
대상 : 대전시 및 충청남도, 장소 : 충청남도청
- '93. 2.10 : 용담댐 건설사업 설명회 개최
대상 : 충청북도, 장소 : 영동군청
- '93. 4. 1 : 용담댐 건설에 따른 관련지역 피해극소화 대책촉구 성명서 발표
- 대전직할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93. 5.15 :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검토 용역을 위한 전문가 1차 전체 회의 개최
- '93. 6.15 :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검토 용역을 위한 전문가 2차 전체 회의 개최
- '93. 9.17 ~ '94.12.15 :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검토 용역 실시
- '95. 3.23 : 용역설명회 개최
대상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장소 : 한국 수자원공사 연수원 대강당
- '95. 6. 9 : 금강수계 보전을 위한 하류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주최 : 환경보전 대전시민연합
- '95. 7.19 : 대전 MBC "지방시대 열린마당" 배석 토론(수자원공사)
- '96. 2. 7 : "용담댐 건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토론회
주최 : 환경보전 충북시민연합, 장소 : 청주시

□ 용담댐 하류수질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수량조절 건의

- 발 의 자 : 장준호 의원외 11인
- 본회의 의결 : '96. 7.24(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건의처 : 건설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 용담댐 건설현장 확인 및 하류 환경실태 점검

- 일 시 : '96. 10. 31 ~ 11. 1
- 방문장소
 - 전북 진안군 월계리 용담댐 건설현장
 -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관광지역
 -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취수탑
 -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취수탑
- 참석인원 : 10명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외 3명)
- 방문결과 및 조치계획

[댐 건설지]

- 댐 사업연혁, 개요 및 사업추진 현황 청취
- 댐 건설현장 견학
- 댐 건설에 따른 건의사항 반영 여부 확인
 -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방류량 증가
 - 최소한의 양만 전주권에 방류하여 충청권의 기록 수리권 보장
(취수터널 위치-동일수위취수 답변)
 - 수질관리에 드는 비용과 주민 생계지원 관계
 - 댐 건설시 수몰지 오염원 제거 예산반영 관계(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음)
 - 어로개설을 통한 어족 보호
 - 기상관측소를 포함한 생태계 변화조사를 위한 연구소 설립
- 문제점 지적 건의
 - 댐 건설후 최악의 갈수기때 전북과 대전, 충·남북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민원과 용수공급에 따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댐 통합 운영관리 규정을 만들어 주길 당부
(대청댐과 통합관리 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것이라는 답변)

-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어로설치를 하여 생태계 변화를 막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길 당부

(현실적으로 기술상,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답변)

[송호리 관광지]

- 송호리 관광지 현황 청취 및 용담댐 건설시 예상되는 수계 환경오염문제 확인

[취수장 : 공통]

- 취수장 현황 및 취수장 시설 현장 점검
- 건의사항 및 당부사항
 - 청원경찰이 적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청원경찰 증배 요구
 - 상수도 요금을 점차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길 당부

· 조치계획

충청북도에 현지방문 결과보고를 이첩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조치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댐 수계에 따른 오염원 예방 활동을 추진